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 센터 지정·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7제8항 신설)

산림복원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원장비, 관련 전담부서와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1 신설)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실적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 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12 신설)

수목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전문관리인 3명 이상, 전담부서와 3천㎡ 이상 포지를 보유하도록 함

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3 신설)

공급센터 운영실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마.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하는 종묘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신설(안 제48조의14 신설)

종묘생산업자 중 1천㎡ 이상 포지와 330㎡ 이상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로 규정함

바. 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자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안 제48조의15 신설)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

사.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제8호,

제71조제4항제5호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조림용 종자), 국립수목원장(조림용 이외의 종자)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73조 관련 별표 3)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7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갈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추는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4.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데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추는 것

제48조의11부터 제48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1(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7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사후 모니터링 실적

3.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실적 평가방법 서면평가로 실시한다.

③ 산림청장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평가일시,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기관의 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제출받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평가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와 검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한다.

제48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운영하는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공급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3.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할 것

제48조의13(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12제8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평가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공급센터의 운영실적
3. 온실, 포지 등 시설 관리의 적정성
4.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실태
5.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6.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방법 및 절차는 제48조의11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8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자격)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2.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제48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조립수종만 해당한다)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

제71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국립수목원장에 한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사목과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사.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 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아.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 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 <u>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u> <u>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추는 것</u> <u>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u> <u>4.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추는 것</u>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 <u>제48조의11(산림복원지 사후 모니</u>
<u>⑧ (생략)</u> <u><신 설></u>	

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7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사후 모니터링 실적
3.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실적 평가방법 서면평
가로 실시한다.

③ 산림청장 제2항에 따른 평
가를 실시하는 에는 해당기
관의 장에게 평가일시, 평가항
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평
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 해당기
관의 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제출받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필
요한 에는 해당기관의 장에
게 추가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평가자료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신

<신 설>

청 절차와 검증을 통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통보한다.

제48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운영하는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공급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3.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할 것

<신 설>

제48조의13(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12제8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평가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신 설>

<신 설>

2. 공급센터의 운영실적

3. 온실, 포지 등 시설 관리의
적정성

4.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실태

5.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
적

6.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방법 및 절차는 제48조
의11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
용한다.

제48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생산
대행자격) 법 제42조의13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
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2.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
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
에 한한다)

제48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손실
보상)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
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15조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 제 ② 산림청장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③ (생략) ④ 산림청장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 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u> </u>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 4. (생략) <u><신설></u>	<u>를 준용한다.</u>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 식물 종자(조립수종만 해당한 다)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 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 시 등에 관한 사항(국립수목</u>
---	---

5. (생략) ⑤ ~ ⑦ (생략)	<u>원장에 한한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연 락 처	(042) 481 - 8812